[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7.12> (앞 쪽)

재 산 목 록

①채무자	사업장명		연 락 처	(전화 :) (휴대전화 :) (E-mail :)
	대 표 자 성 명		대표자주민 등 록 번 호	
	소 재 지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부동산소유권			
	④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 임차권 등			
	⑤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⑥부동산에 준하는 권리	⑦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⑧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⑨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채무자(사업주) ㊞

대리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재산목록 작성요령

1. 일반적 주의사항

> ※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가. 재산목록은 만년필이나 볼펜을 사용하거나 타이프라이터 등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사항을 명확하게 기입·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양식의 해당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도의 별지에 기입하고, 양식의 해당란과 귀하가 작성한 별지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예 : 양식의 해당란에는 “별지 1에 기재”라고 표시하고, 별지 1에는 “양식의 ③번 항목에 관한 것”이라고 부기함).

다. 각 항목에 기재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그 사실관계를 가능한 한 상세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2. 각 항목의 기재요령

가. ②란의 기재시에는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되, 명의신탁된 재산과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포함하며, 그러한 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을 받은 제3자의 성명과 주소를 아울러 기재하십시오.

나. ③란은 가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소재지, 지목(건물의 경우에는 구조와 용도), 면적,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그 소유관계를 표시하며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십시오.

다. ④란은 부동산의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과 차임 및 지료,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라. ⑤란은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예 :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을 그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종류, 지목 또는 구조와 용도, 계약일자, 대금액, 상대방의 성명·주소를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마. ⑦란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종류·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들에 관한 인도청구권이나 권리이전청구권에 관하여는 라. 항목을 참조하여 기재하십시오.

바. ⑧란은 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권리의 종류, 광물 또는 어업의 종류(예 : 금, 근해선망어업), 그 권리가 설정된 토지 또는 수면의 위치, 그 권리의 범위를 구분하여 기재하십시오.

사. ⑨란은 저당권·유치권·질권 또는 양도담보 등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는 금액, 변제기일, 상대방의 성명·주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담보물권의 내용도 아울러 기재하십시오.